

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부산광역시교육감  
2020년 7월 8일

부산광역시 조례 제6164호

##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부산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3조(적극행정 지원위원회)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(이하 “지원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(단,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경우 공무원이 책임 회피 등을 목적으로 의견 제시를 요청한 때에는 제외한다)

- 2.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
- 3.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을 위한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여부

제4조(지원위원회의 구성)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.

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지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,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,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비밀보호) 위원은 지원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9조(의견청취) 지원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,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지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◇ 제정이유

○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(2019.8.6. 제정)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
### ◇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제1조)

나.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임(제2조)

다.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임(제3조~제12조)